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4

발의연월일: 2020. 6. 26.

발 의 자:신영대·서삼석·김철민

김윤덕 · 한병도 · 유정주

인재근 · 이장섭 · 황 희

신정훈 · 임호선 · 김성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새만금사업은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·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,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사업이자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사업임.

하지만 사업지역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있음에도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전라북도지사로 하여금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 지 못하고, 도내 지역 간 갈등·분쟁마저 야기되는 상황임.

아울러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저해 및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,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원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,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(안 제6조제4항), 정부로 하여금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6조제4항 후단 중 "새만금청장은"을 "전라북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새만금청장은"으로, "반영할 수 있다"를 "반영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
책무) ①·② (생 략)	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정부는 「국가균형발전 특별
	법」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
	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
	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
	추진할 때에는 새만금사업의
	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
	한다.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	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계획에	4
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	
제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새만금</u>	<u>전라북</u>
<u>청장은</u>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	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
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<u>반영</u>	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새만금
<u>할 수 있다</u> .	<u>청장은</u>
	<u>반영</u>
	하여야 한다.